

#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11월 5일 김한태 의원 등 23인

나. 회부일자 : 2010년 11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6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2010년 12월 20일) 상정 수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한태 의원)

### □ 제안이유

- 밝고 명랑한 신뢰받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진실·질서·화합을 바탕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 (안 제2조)
-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함. (안 제3조)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조례안 발의배경은?	○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임.
○ 관련 단체로부터 요구를 받았는 지?	○ 그런 사실 없음.
○ 관련 단체와 조례내용에 대해 협의는 하였는지?	○ 협의했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 자세히는 알지 못함.
○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는지?	○ 해당됨. 그러나 비영리단체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의 역할 등을 볼 때 국민운동단체와 별개로 생각함.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서는 국민운동단체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해당되는 것임. 국민운동단체가 활동을 많이 한다는데 다른단체도 많이 함. 또한 국민단체가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그만큼 활동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 보조금은 1,500만원으로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 1,500여만원은 순수 운영비이고 그 외에도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발의하게 됨.
○ 새마을, 자유총, 바르게법 제정은 언제인지 아는지?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된 사실을 아는지?	○ 알고 있음. (이상 김한태 의원)

## 4. 토론요지

### 가. 반대토론

-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고 국민운동단체는 오히려 특혜로 볼 수 있는 지원을 받아 왔다고 생각함. 따라서 단체간에 불신과 반목 그리고 의원간의 입장차이 등이 있으므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국민운동단체의 지역봉사 역할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음. 논란의 핵심은 지원조례가 없어서 단체의 격이 떨어지고 예산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님. 이번 조례는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 재정되어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나 이번에 상정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들이 단체의 특성이 담겨 있지 않고 그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조례 제정의 의미를 알 수 없음.

### 나. 찬성토론

-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명분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있었음이라 생각함. 회원들의 사기양양 등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이므로 일부 불부합하는 조항만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함.
- 조례와 예산을 결부하는 것은 맞지 않음.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고 또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가결하는 맞음.
- 국민운동단체는 각각의 특성이 따로 있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통합하는 것은 단체운영 목적이나 기능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가결이 바람직함.

##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 6. 소수의견 요지

- 국민운동단체별 개별 조례는 국민운동단체 통합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68
의결 연월일	2010. 12. 20

제안년월일 : 2010년 12월 20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문맥상 불부합된 조항을 수정함.

## 2. 수정 주요골자

-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을 “그 산하 회원단체”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함.(안 제3조)

#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을 “그 산하 회원단체”로 한다.

안 제3조 중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조례안과 같음.』

## 신·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와 <u>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u>를 말한다.</p> <p>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u>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u>과 <u>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활성화</u>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p> <p>1 . ----- ----- <u>그 산하단체</u>를 말한다.</p> <p>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은 <u>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u>과 <u>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활성화</u>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p>

##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